

양날의 검, 퇴직금중간정산

김동엽 CFP®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중국 송나라의 저공(狙公)이 원숭이를 기른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앞으로 도토리를 아침에 3 개, 저녁에 4 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이 화를 내며 아침에 3 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 견디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 개를 주고 저녁에 3 개를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좋아했다고 한다. 이처럼 조삼모사는 눈 앞의 이익만 쫓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인용된다.

그러나 원숭이들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저녁에 주인 마음이 바뀌어 도토리를 못 받을 수도 있다면 한 개라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고, 도토리를 미리 받아서 다른 곳에 운용할 수 있다면 수익도 얻을 수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인이 도토리를 아침에 3 개 주는 대신 저녁에 1 개를 더해 5 개를 주면, 즉 조삼모오(朝三暮五)가 되면 원숭이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1 개를 더 받기 위해 저녁까지 배고픔을 견뎌내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퇴직금이 중간정산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아 노후재원을 튼튼히 해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우선 중간정산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도 있고, 중간정산을 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무엇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때문에 일단 현금을 확보하고 보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떤 생각이 옳을까?

여기서는 근로자들이 중간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내용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중간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학습목표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와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 이해한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선호하는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 이해한다.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 근로자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 이해한다.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 퇴직금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6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본래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하기 이전에는 수령할 수 없었다. 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이 훨씬 지난 1997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다.

2. 근로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요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의 종료 없이 퇴직금을 수수하는 것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②항 (舊 근로기준법 34조 ③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중간정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노동자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유롭게 정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 경우 중간정산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초 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4. 중간 퇴직과 중간정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퇴직이라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중도에 수령하곤 했었다. 즉 퇴직금을 중간에 수령할 목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간퇴직은 퇴사 후 재입사 할 때 계속 근로 관계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조건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계속 근로를 인정되지 않으면 재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퇴직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 임의 또는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회사의 방침에 따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신규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중간퇴직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보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

반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오로지 그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후 단시일 내에 다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다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 하였다.² 이렇게 되면 재입사 후 1년간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이 강화되면 중간퇴직 형태를 빌어 퇴직금을 중도에 수령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계속 근로여부 인정과 관련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¹ 판례일자:1997-06-27 판례근거 : 대법 96다46974

² 판례일자:1992-11-24 판례근거 : 대법 91다31753

5.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재직 기간 중 목돈 마련이라는 근로자의 요구와 누적된 퇴직부채의 해소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결합되면서 크게 확산되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에서 중간정산제도를 선호하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자 입장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퇴직금중간정산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³ 첫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노후생활재원으로 보기 보다는 ‘급여의 연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가지는 노후보장 기능에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연금 등 노후 보장을 위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므로 퇴직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적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존속과 성장에 대한 신뢰가 낮고 본인의 이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래 퇴직금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즉 불확실한 미래 소득보다는 당장의 현금을 선호하게 된다.

■ 사용자 입장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경영개선 차원에서다. 중간정산을 통해 미래 퇴직금 지급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연봉제를 함께 실시하면서 정기적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사실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6.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제를 도입한 일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켜 주고 있어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줄 경우 이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 퇴직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잦은 분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행정해석⁴을 통해 연봉제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다.

³ 노동부, 퇴직연금 활성화 과제 법제화 방안 연구, 2008.12.

⁴ 노동부행정해석, 연봉제하에서 퇴직금중간정산 요건 변경, 2005.12.

■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것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을 받을 때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자의 요구는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등과는 별도의 요구이어야 한다.

■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것일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이라고 하여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분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퇴직금 대상자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아니다.

■ 퇴직금 액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을 것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7.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전에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최근 중간정산요건이 강화된다고 하자 중간정산을 서두르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적어도 아래 두 가지 사항은 중간정산을 받기 전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회사의 임금상승률과 개인의 투자수익률을 비교해 본다.

만약 중간정산 퇴직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예상되는 투자수익률과 회사의 임금상승률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다고 하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과거 전체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 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는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이외)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③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됨. 그러므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법정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

근무기간을 소급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별 노력 없이 퇴직금을 임금상승률로 복리로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래 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다른 곳에 운용한 경우와 중간정산 받지 않은 경우의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 효과 비교] ⁵

(단위: 만원)

퇴직금 중간정산 전후 효과 Simulation

- 입사 첫해 급여는 ? 3,000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 근무 기간 동안 예상 임금 상승률은 ? 8% 근무기간 동안 평균 임금 상승률
- 중간 정산한 퇴직금의 예상 투자수익률은? 4%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재투자수익률 (전부 소비할 경우 0%)
- 중간정산까지 근무한 기간은 ? 5 중간정산하기 전까지 근속연수 입력(정수로 입력)

근속 연수	30일 평균임금	① 예상 퇴직금 (중간정산미실시)	중간정산 실시				중간정산 전후 퇴직금 차이 [① - ②]
			중간정산 퇴직급여	중간정산후 퇴직급여	중간정산 퇴직금 운용수익	②합계	
5	340	1,701	1,701	-	-	1,701	-
10	500	4,998	-	2,499	2,069	4,568	430
15	734	11,014	-	7,343	2,517	9,860	1,154
20	1,079	21,579	-	16,184	3,063	19,247	2,332
25	1,585	39,632	-	31,706	3,726	35,432	4,200
30	2,329	69,880	-	58,233	4,534	62,767	7,113

만약 입사 첫해 평균임금이 3,000 만원이고 회사의 평균 임금상승률이 8%인 근로자가 입사후 5년째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퇴직금으로 약 1,700 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돈을 세후 연복리 4%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적립금이 10년 후에는 9,860 만원, 15년 후에 19,247 만원이 된다. 이는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을 때 퇴직금에 비해 1,154 만원, 2,332 만원 적은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임금상승률⁶이 약 6.5% 이므로 중간정산을 받아 다른 곳에 운용하려고 할 때 이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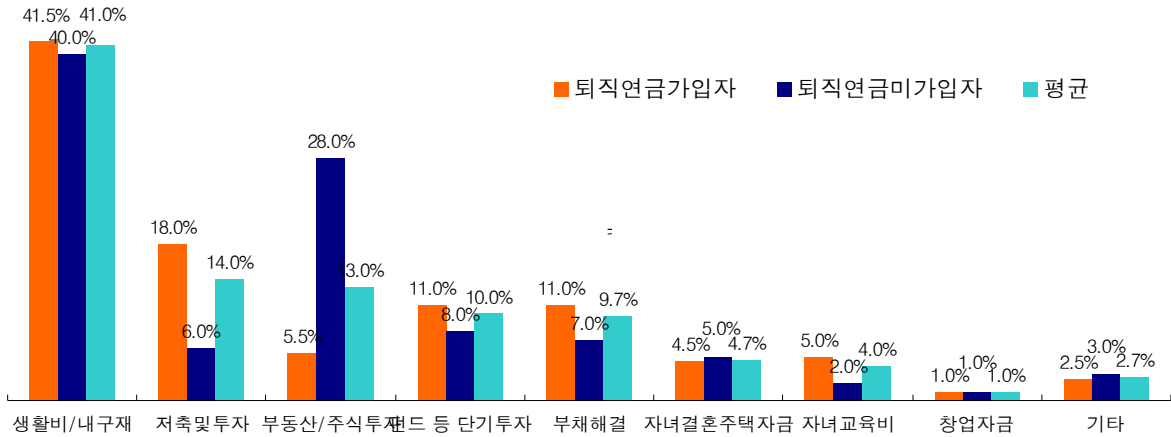
반대로 회사의 임금상승률 이상으로 중간정산금을 운용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중간정산을 고려해 볼 수 있다.

⁵ 시뮬레이션 기간 동안 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⁶ 노동부/통계청, 1993년~2007년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의 기하평균

■ 퇴직금 이외의 다른 노후 재원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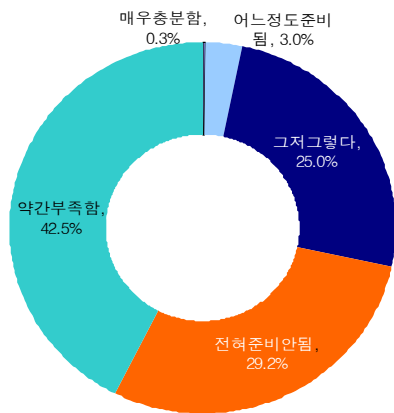
[그림 2. 중간정산퇴직금의 주된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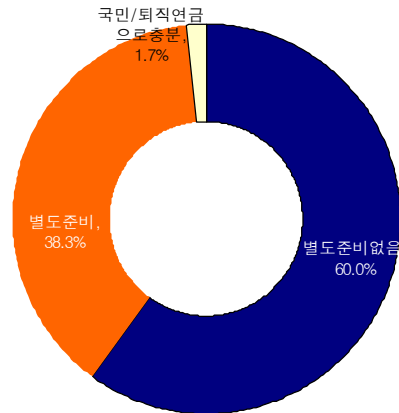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퇴직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노후를 위한 다른 준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008년 조사⁷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40%가 퇴직금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내구재 구입(41.0%)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후자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14%로 불과해 중간정산 퇴직금이 노후를 위해 사용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



[그림 4 별도 노후준비 현황]



⁷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2008.06.

물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한다고 해도 별도로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노후준비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근로자는 3.3%에 불과하고 71.7%의 대부분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별다른 준비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며 살면 나중에 문제가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노후란 멀리 있을 뿐이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쪽에만 날이 있는 칼을 도(刀)라고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검(劍)이라고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양날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검을 잘못 휘두르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